

교무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1997. 3. 01

□ 제정 : 2007. 6. 30

□ 개정 : 2007. 9. 07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학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교무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처장, 각 대학원장 및 학장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 및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총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소집) 교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,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
2. 편제 또는 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3. 입학, 졸업, 진급, 수업시행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
4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
5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심의) 교무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한다.

제7조(간사) 교무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규정은 1997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